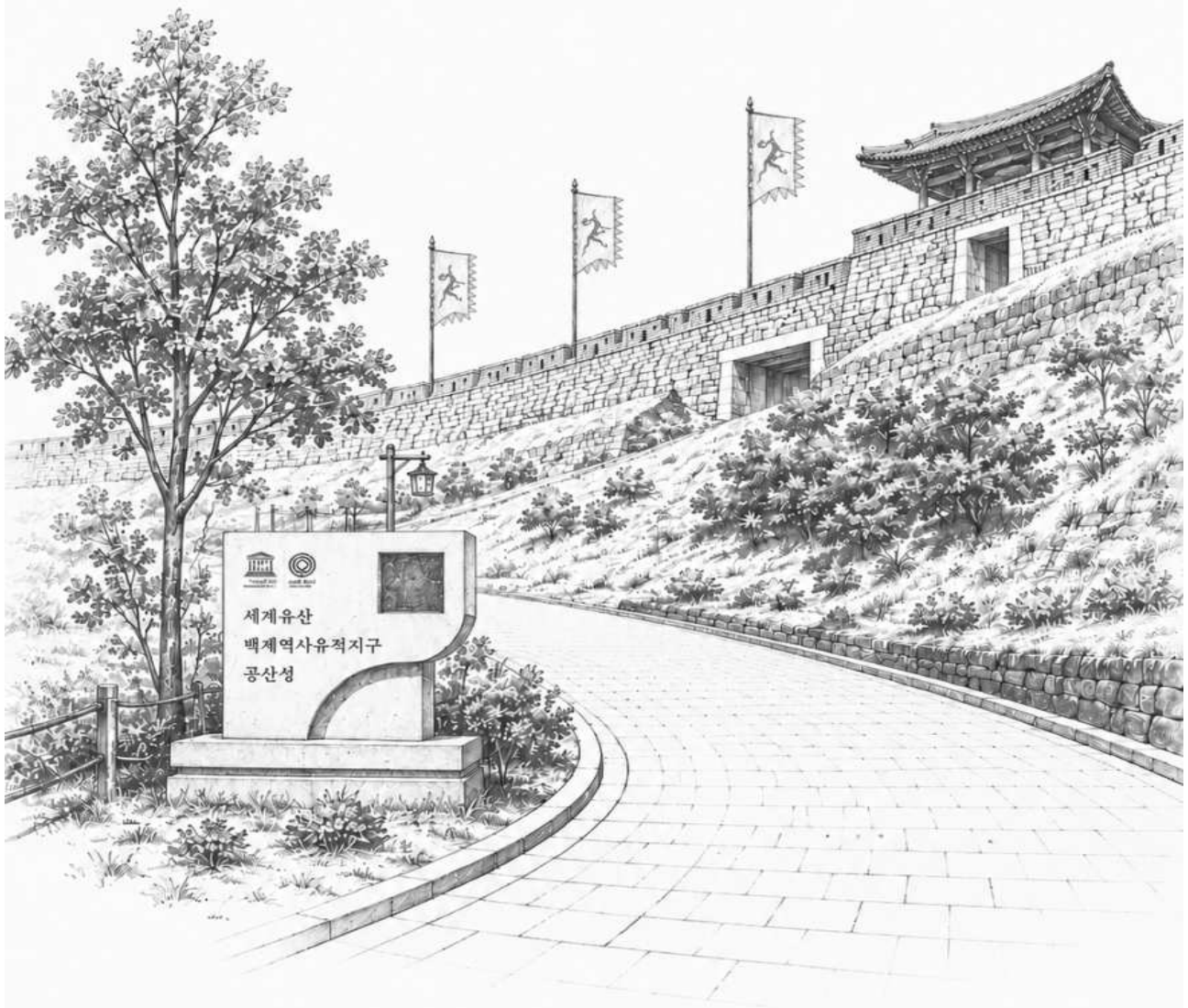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91호 2026. 8. 25.(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조 례】

제197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1975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1976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제1977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1978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979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1980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8
제1981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공 고】

제2026-233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
제2026-2344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제2026-2356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2
제2026-2364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6
제2026-2378호 공주시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96

【고 시】

제2026-169호 검상농공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01
---	-----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가축 · 동물 · 축산물의 방역 · 검역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지급액란 중 “**500,000원**”을 “**60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5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6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관해”를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홈페이지**”을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공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5.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6.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제7조제1항 단서 중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물가모니터요원**”을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7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공간, 교육관,
사무실,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료·체험료·이용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중 “**박물관 안**”을

각각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노숙하는 행위”를 “노숙하는 행위 (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박물관 안”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급금”을 “지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3. 교육원

4. 전망대 카페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전망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어 른(19세 ~ 64세)	2,000
청소년(13세 ~ 18세)	1,500
어린이(7세 ~ 12세)	1,000

비고

1. 전망대 이용을 위한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표시간은 개장시간 10분 전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기상 악화(강풍·우천·폭설 등) 및 시설 점검 시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2. 전망대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보수·점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입장 후 중단된 경우 포함
3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입장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입장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2]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이용료 면제 기준

-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다.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 면 율
1. 65세 이상인 사람	50%
2.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4.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	50%

[별표 3]

구석기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5항 관련)

1. 체험시설 이용료

시 설 명	금 액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슬라이드	3,000원	2,000원	1명 / 2회 기준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및 9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 외 기간은 비수기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점검·보수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탑승 대기 중 중단된 경우 포함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시설 고장, 운영 오류 등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4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탑승 전 이용이 제한된 경우(신장 130cm 미만, 음주자, 임산부, 골격·관절 질환자, 심약자 등)	전액 반환	탑승구 진입 전 확인된 경우에 한함
5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탑승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이용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4]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시설별 이용료

시 설 명	규 격	사용기간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비수기 및 주중(평일)	비 고
게스트 하우스	47.08m ² (4인실)	1동/1일	160,000원	100,000원	3실
야영장	나무데크	1면/1일	30,000원	30,000원	개소

가.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나.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2. 이용료 참고사항

가. 게스트하우스

- 기준인원 초과 1명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1명까지로 한다. 이 경우 침구류는 추가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나. 야영장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다. 공통사항

- 위 사항은 시설 예약 후 이용료를 선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 당일 취소는 시설 이용 시작일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준용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3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비고 가. 이용자 귀책 '공제'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용시간: 입실 15:00 ~ 익일 11:00 기준 /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 다. 반환은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5]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	시설명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평일)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게스트하우스	20%	20%
다.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단, 2자녀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만 가능) 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야영장		

2. 참고사항

- 가.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 감면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감면 대상 중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한 가정에 1동 또는 1면만 감면한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8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본관동** :”을 “**본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관동** :”을
“**별관** :”으로, “**가족탕**”을 “**실내가족물놀이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숙박동** :”을 “**치유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본관동과 별관동**”을 “**본관, 별관 및 치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휴양공원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1.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 운영)”을 “(운영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관리자가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감면한다”를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시해야”를 “제시하여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중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이용료(제15조 제1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구 분	시설명	면적	기 준	이용료(원)		비 고
				평일	토요일	
본관	대강당	252m ²	오 전	70,000	90,000	1. 이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2.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액 100분의 20을 가산
			오 후	80,000	100,000	
	교육실 운동실	48m ² 53m ²	오 전	40,000	60,000	
			오 후	50,000	70,000	
	체험실	35m ²	오 전	20,000	40,000	
			오 후	30,000	50,000	
별관	체험실	54m ²	오 전	40,000	60,000	
			오 후	50,000	70,000	
치유관	체류형 치유실 1동~7동	30m ²	오 전	30,000	50,000	
			오 후	50,000	70,000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원)	비 고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교육	일반	5	150	무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교육	초·중등	15	225	무료	
방과후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초·중등	6	110	무료	
비대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영유아, 초등	10	400	무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실	초등	1	30	무료	
생활 속 환경성질환 예방교실	일반	5	75	무료	

나.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원)	비 고
아토피친구를 구해줘	영유아	5	100	5,000	
미세먼지 이견뛰지	영유아	5	100	5,000	
마음공감미술	영유아, 초등	15	200	5,000	
자연 속 환경성질환 치유교실	영유아, 초등	24	300	20,000	텃밭체험 10:00~11:30
어린이 환경성질환 현장체험학습	영유아, 초등	10	120	10,000	숲체험 10:30~14:30
어르신 생태환경교실	65세 이상	5	130	무료	
성인단체힐링	일반	30	400	20,000	
임산부 숲속힐링	일반	6	80	무료	
아쿠아테라피 (족욕, 건반신욕, 실내가족물놀이실)	일반	-	-	10,000 / 60,000	족욕 10,000원 건반신욕 10,000원 실내가족물놀이실 60,000원
건강측정	일반	-	-	무료	

다. 캠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원)	비 고
아토피힐링캠프	환경성질환 관심가족	8	150	20,000 ~ 50,000	성인 50,000원 초등학생 이하 20,000원 (미취학아동 포함)
취약계층 아동 휴양캠프	취약계층 아동가족	2	40	무료	드림스타트 연계
시민대상 힐링캠프	일반	4	60	20,000 ~ 50,000	성인 50,000원 초등학생 이하 20,000원 (미취학아동 포함)

비 고

1. 본 프로그램의 운영횟수와 연간인원은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인단체 힐링 및 아쿠아테라피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주시민, 온누리공주시민은 5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30% 할인을 각각 적용한다.(다만, 할인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프로그램 중 체험 프로그램과 캠프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79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을 “두”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80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또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나.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

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재정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청구금액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공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6. 8. 11.)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8월 25일

공주시 조례 제1981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를 “별표 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 수수료 = 마을별 운반 단가* + [수집 기준 단가 × 분뇨처리량(m³)]

* 마을별 운반 단가 = 운반 기준 단가 × 마을별 거리(km)**

** 마을별 거리는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왕복 거리

2. 수수료 산정 참고사항

가. 마을별 거리

마을별 거리 (km)	읍면동	마 을 명	비 고
2	웅진동	웅진2통, 웅진3통, 웅진4통, 웅진5통, 웅진7통	
7	우성면	평목리	
	중학동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웅진동	웅진1통, 웅진6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옥룡동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6통, 옥룡20통	
	금학동	봉정동	
	신관동	신관16통, 신관41통, 신관42통	

12	우성면	신웅리, 옥성1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금학동	검상동,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태봉2통,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옥룡동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동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6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쌍신동	
	이인면	만수리	
	월송동	금흥1통, 금흥2통, 금흥3통, 금흥4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금흥10통, 무릉동, 월송1통, 월송2통, 월송6통, 월송7통	
	우성면	대성1리	
17	이인면	오룡리, 신흥리, 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초봉리	
	우성면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대성2리, 옥성2리	
	신관동	월미1통, 월미2통	
	의당면	율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수촌2리	
	우성면	동대리, 반촌리, 목천1리, 보흥1리	
	옥룡동	신기2통, 상왕3통	
	월송동	송선1통, 송선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8통	

22	이인면	운암리, 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용성2리, 구암1리, 구암2리	
	의당면	청룡2리, 오인리, 요룡1리, 요룡2리, 수촌1리, 유계리	
	우성면	한천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오동리	
	사곡면	신영3리	
	옥룡동	상왕2통, 신기1통, 상왕1통	
	월송동	석장리동, 동현1통, 동현2통	
	계룡면	화은1리, 화은2리	
27	우성면	용봉리	
	사곡면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화월1리, 화월2리	
	탄천면	대학1리	
	계룡면	기산1리, 기산2리	
	반포면	마암1리, 마암2리	
	의당면	두만리	
	정안면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이인면	달산리, 산의리, 북룡리	
32	이인면	신영1리, 신영2리, 반송리, 이곡리	
	탄천면	대학2리, 운곡리, 삼각1리, 삼각2리, 광명리, 장선1리	
	정안면	북계1리, 석송리, 평정1리, 평정2리, 전평리	
	우성면	어천리	
	사곡면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계룡면	봉명리, 월암리, 내흥2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1리	
	반포면	봉곡1리	
	정안면	장원1리	

37	탄천면	유하리, 건동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리, 남산1리, 분강리, 장선2리	
	의당면	월곡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도신리, 덕학리	
	정안면	운궁리, 쌍달리, 장원2리, 보물리	
	우성면	안양리, 봉현리	
	사곡면	가교1리, 대중리	
	신평면	선학리, 영정리, 평소리	
	계룡면	중장2리, 중장3리, 유평2리, 하대1리, 하대2리, 하대3리, 화헌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월곡리	
	반포면	공암1리, 공암2리, 공암3리, 봉곡2리, 봉곡3리	
42	탄천면	화정1리, 화정2리, 남산2리, 가척리	
	계룡면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반포면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온천2리	
	정안면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광정2리, 광정3리, 고성리, 어물리	
	우성면	죽당리	
	사곡면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신평면	산정1리, 동원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화흥리	
47	유구읍	만천2리, 백교2리	
	계룡면	양화1리	
	반포면	상신리, 학봉1리, 학봉2리	
	정안면	사현1리, 사현2리, 대산1리, 대산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태성리	
	사곡면	회학리	
	신평면	산정2리, 산정3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청흥리, 조평1리	

52	유구읍	만천1리, 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유구3리, 녹천1리, 백교1리, 구계2리	
	정안면	문천리	
	사곡면	월가리, 부곡리, 유룡리	
	신평면	용수리, 쌍대리, 조평2리, 봉갑리	
57	유구읍	녹천2리, 녹천3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구계1리, 노동리	
	정안면	내문리	
62	유구읍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연종리	
	정안면	산성리	
67	유구읍	명곡1리, 명곡2리, 추계1리, 추계2리, 세동리, 덕곡리	
72	유구읍	문금1리	
77	유구읍	문금2리, 탑곡리	

나. 운반 기준 단가 : 1,550원/km

다. 수집 기준 단가 : 22,100원/m³

공주시 공고 제2026-233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 변경된 인용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 상위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 체계에 정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규정 명칭 현행화(안 제11조제2항)
 -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 →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규정」

○ 옥내 누수 감면 비율 조정(안 제22조제4항)

- 옥내 누수로 인한 과부과 요금 감면 비율을 조례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정상요금 제외 잔여금액의 50% → 개정: 60%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대상 추가(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 조례에서 신설된 감면 대상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추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4.(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본관 1층 상하수도과
- 전화번호 : 041-840-7926 / FAX : 041-840-3737
- 전자우편 : hedra3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규칙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7926)

☐ 제출방법 ㄱ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본관 1층 상하수도과
 ㄴ FAX : 041-840-3737, 전자우편 : hedra3999@korea.kr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을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100분의 50분**”을 “**100분의 60분**”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을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제14호“경로당”, 제15호“어린이 집”**”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생략)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 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 리 규정」----- ----- ----- ----- ---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 면) ① ~ ③ (생략)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 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 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 요금”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u>100분의 50분</u> 을 감면하 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④ ----- ----- ----- ----- ----- ----- <u>100분의 60분</u> ----- ----- -----.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 례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 ----- ----- ---
1. 별표 5의 제1호“가구원 모두 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	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거주하는 세대”, 제5호“사 회복지법인”, 제12호“18세 미 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청한다. 2. ~ 5. (생 략) ② (생 략)	----- ----- -----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제14호“경 로당”, 제15호“어린이집”은 -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 도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번호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경로당 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 4.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해당자)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7980, 7926, 7927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 041-840-7921)

[관계법령 등 발췌문]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매월 5,000원까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5,000원까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³ 이상~100m ³ 이하 적용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³ 이상~20m ³ 이하 적용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5,0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월 평균사용량 중 적은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6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³ 이상~100m ³ 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5,000원까지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
1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매월 5,000원까지
15. 「영유아보육법」 제10에 따른 어린이집	매월 5,000원까지
1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공주시 공고 제2026-2344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백제오감체험관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놀이형 역사 체험 및 가족 단위 휴식 공간으로 개편
- 개편된 시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설 명칭 사용 및 어린이 이용자 중심의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시설 명칭 ‘백제오감체험관’을 ‘고마곰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한 사항 반영 정비(제명)
-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조 ~ 제3조)

- 이용료, 체험료 징수, 이용 시간 및 방법, 휴관, 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제9조)
 -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놀이형 체험시설로 휴관, 이용 시간 및 방법 등 정비
- 위탁 운영, 위탁 해지, 지도·감독,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제13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14조 ~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9. 16.(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유산과(사적지관리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37(웅진동) / 우편번호 : 32535

- 이메일 : 11027sk@korea.kr

- 전 화 : 041-840-2212 / FAX : 041-840-3720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 등>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유산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의 시정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난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유산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왕릉로 37 (32535)

☐ FAX : 041-840-3720 E-mail : 11027sk@korea.kr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체험관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료) ①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관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험료 징수) ① 시장은 체험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발생한 수익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 시간 및 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시간대를 구분하여 회차제로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입장 시간은 각 회차 시작 후 20분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험관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운영상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 누리집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성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3.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 또는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운동기구, 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키보드, 바퀴달린 신발 등의 물건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5. 음주자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지닌 사람

8. 정당한 이유 없이 체험관의 이용 규정 또는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체험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낙서 포함)

4.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방해하는 고성, 소란, 난동 등의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체험관의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체험관 이용 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10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

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체험관에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관 이용료(제4조제2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개인	36개월 미만	무료	
	36개월 이상	3,000원	
단체	36개월 이상	1,500원	※ 15명 이상 (인솔교사 무료)

[별표 2]

체험관 이용료 감면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면율	비 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65세 이상인 사람 7.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 충청남도 다자녀행복키움 카드 소지자 및 가족 10.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	50%	

[별표 3]

체험관 이용료 반환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개 인 및 단체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입장료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장료 전액
	3. 체험관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관 이용일 당일까지	입장료 전액
	나. 체험관 이용일 경과 후	반환 불가

비고 : 이용일은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기준으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6-2356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2019년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이의신청 절차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객관적 평가제도를 보장하고 공주시 위원회 운영 규정 통일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연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 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결과반영 명문화

2. 주요내용

- 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안 제8조)
- 나.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규정 삭제
- 다. 성과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안 제10조,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단서 신설
-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및 증빙자료의 제출, 처리 결과에 대한 문서 통지 규정을 명시함.

라.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12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 준용하여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자체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3조)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피평가자 제외 및 연임 규정을 개정
 - 위원자격 : (당초)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변경) 부시장
 - 연임규정 : (당초) 연임 1회 (변경) 연임 2회

바. 제15조(소위원회) 규정 삭제

사.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기타 어문규범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전략실(성장전략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미래전략실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102 / 팩스 : 041-881-6716 / 이메일 : asmoon0@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https://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성장전략팀 ☎ 041-840-2102)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팩스 : 041-881-6716 / 전자우편 : asmoon0@korea.kr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성과관리 대상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시의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시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 4.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 5. 시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6. 시의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 결과 이의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예산편성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를 “자체평가제도”로 한다.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4항제1호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단체 평가업무”를 “시의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 분야”로 한다.

1. 부시장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5항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 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 률성 · 효과성 ·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 ----- ----- ----- -----.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 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 소, 읍·면·동 등 공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시 에 두는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 리 대상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임무 · 전략목표 · 성과	2. 시의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

<u>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u> 3. <u>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u> 4. <u>시의 자체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5. <u>과거 2년간 성과결과</u> 6. <u>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u> <u><신 설></u> ②・③ (생략) <u><신 설></u>	<u>의 내용에 관한 사항</u> 3. <u>시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u> 4. <u>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u> 5. <u>시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6. <u>시의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8조(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u> <u>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u>
<u>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u>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u>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u>제9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u> ① ----- ----- ----- ----- 「<u>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② (생 략)

제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조(평가 결과 이의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예산편성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성과가산급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

-----.

1. · 2. (생략)

<신설>

3.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4. 자체평가제도 -----
--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부시장

2. 시의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 분야-----

⑤ -----
-- 두 차례만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회의) ① -----
위원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u>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 한다.</u>	<u>제16조 <삭 제></u>
<u>제16조 (생 략)</u> <u>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18조 (생 략)</u>	<u>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u> <u>제18조(수당 등) -----</u> -----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u>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u>

공주시 공고 제2026-2364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스마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도입 근거 및 수거 단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RFID 종량기 설치 근거 및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별표 2)
- ☐ 수수료 감면(전용봉투 무상 배부) 지급량 규정 신설(안 제 21조제2항)
- ☐ 전용봉투 도입에 따른 5ℓ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수수료 삭제 등(별표 2 ~5)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자원순환과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daulique@korea.kr

- 전 화 : 041-840-8605 / FAX : 041-840-37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1-840-8605)

☐ 제출방법 ☞ 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도**”를 “**별도로**”로 한다.

제5조 중 “**발생한**”을 “**발생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갈끔 포장**”을 “**갈끔포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RFID를 활용한 개별중량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 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제3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위탁하여 재활용”을 “위탁”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한”을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필증”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전용수거 용기의 재질란 중 “프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중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수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을 “**생활폐기물을 각각**”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중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규격봉투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삭제한다.

별표 7의 특수규격봉투란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0조제2항, 제4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구 분	대 상	용 량	금 액	비 고
전용수거용기	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	25 ℓ	850원/회	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120 ℓ	4,070원/회	

※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구 분	용 량	금 액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3 ℓ	70원	배출량에 따라 봉투 선택가능
	5 ℓ	110원	

3.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 단가

적 용 대 상	적용수수료(원/kg)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	23원

※ 사업장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소형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이 해당)

[별표 3]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색 상	종 류	규 격	비 고
납부필증	청 색	25 ℓ	150mm × 25mm	○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자주색	120 ℓ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제11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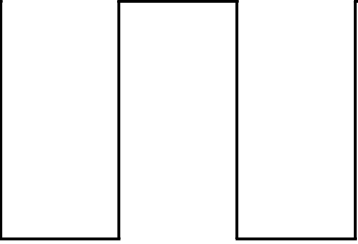
구분	규격 (내부용량)	구조	재질
전용수거 용기	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플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2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한다.
- 용기 전면과 뚜껑상부에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이나 배출요령 등을 인쇄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 (제11조의2제3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o l)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에 행군 후(염분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조개(호두)껍데기, 동물 뼈, 채소 뿌리 등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19:00 ~ 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표 6]

납부필증 공급 · 판매가격(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판매단위	공급금액	대행수수료 (6%)	납부필증 판매소 이윤 (9%)	판매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5 ℓ	1매	736	44	70	850
	120 ℓ	1매	3,522	211	337	4,070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사 업 장 별	점검횟수
우수관리	○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 스스로 감량,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반기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
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 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40	50	60
	라.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0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3.-----	-----	
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	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	-----	-----	
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	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	-----	-----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	-----	-----	
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	-----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	-----	
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	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	-----	-----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	-----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	-----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	-----	-----	
리 · 판매하는 다방 및 빵 · 떡	리 · 판매하는 다방 및 빵 · 떡	-----	-----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	-----	-----	
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	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	-----	-----	
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	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	-----	음식물	
류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류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류를 -----	-----	
하지 않는 커피 · 주류 등을	하지 않는 커피 · 주류 등을	-----	-----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	-----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외한다)을 말한다.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u>별도</u>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 ----- <u>별도로</u>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u>발생한</u>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 ----- ----- ----- <u>발생된</u> -----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일반음식점营业을 하는 자 및 「관광진	2. ----- ----- ----- -----.

홍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u>깔끔 포장</u> 식자재 구매, 소형 ·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 <u>깔끔포장</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 -----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 ----- --- 있도록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u>전용수거용기</u> 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	② ----- ----- <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u> -----

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종량제 실시 외 지역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종류·재질)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② (생략)

③ 납부필증 공급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 공급금액의 100분의 6

-----.

③ (현행과 같음)

④ RFID를 활용한 개별종량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종량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9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생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 6과 같

----- 별표 6과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

-----.

1. -----

----- 위탁-----

--.

2.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별표 7-----

다.

1. 2. (생략)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
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
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
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생략)

제21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하여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제10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8-----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료 감면) ① -----

----- 음식물류 폐기물 전

등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용봉투</u> ----- -----. 1. ~ 3.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공주시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주시장



I. 위탁개요

1. 위탁업무 : 공주시가족센터 운영 전반
2. 위탁기간 : 5년 (2027. 1. 1. ~ 2031. 12. 31.)
3. 민간위탁 사업비 : 2,064백만원
4. 사업내용
 - 가. 가족관계 및 가족 안정성 증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5.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II. 신청자격 및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

- 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나.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준용

Ⅲ. 공고 및 접수

1. 공고기간 : 2026. 8. 24.(월) ~ 8. 31.(월)

2. 접수기간 : 2026. 8. 24.(월) ~ 8. 31.(월) 18시까지

※ 접수기한 경과 시 접수불가

3. 접수장소 : 공주시청 가족지원과 가족정책팀(공주시 봉황로 1) / ☎840-8875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 변경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5. 제출서류

가. 공주시가족센터 수탁운영 신청관련 서류 : 원본 1부, 사본 10부.

- ① 신청서, 서약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④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⑤ 사용인감 신고서
- 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나. 정량적 평가서류 : 원본 1부, 사본 10부.

① 단체관련 서류 각1부(설립목적, 조직, 사업영역, 자산현황 등)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 법인정관,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② 기타 증빙서류(경영상태, 자산현황, 수행실적 등)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공모 대상에서 제외함

IV. 위탁 운영단체(법인) 선정

1.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자 : 2026. 09. 07.(월) 10시

나. 장 소 : 공주시 행복누리 5층 회의실(공주시 의당로 21)

다. 심사방법 : 신청단체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탁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 발표순서 : 신청단체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발표시간 : 20분 이내(사업계획 10분, 질의응답 10분)

2. 선정기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20)	단체의 운영기반	▶ 조직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 재무구조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1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 수행 실적	10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80)	목적과 취지	▶ 사업취지·목적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	10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기획·구성의 우수성과 창의성	10
	인력 및 조직	▶ 적정 인력 및 조직 운영방안 ▶ 종사자 고용 및 노동조건 ▶ 기존종사자 고용승계(100%) 및 인적자원 관리계획 ▶ 근로조건보호확약이행 및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방안	15
	예산집행계획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	15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 서비스 향상 전략 등	10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실적 ▶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방안 등	10
	안전관리능력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구체성·실효성 ▶ 안전보건 조직구성, 위험성평가·대응체계 구축여부	10
합 계			100

3. 선정절차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수탁자 결정

4. 평가방법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함.(최고·최저 점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중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단독공모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의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5. 적격자 발표 : 2026. 09. 09.(수) 예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적격자 개별 통보

6. 협약체결 :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V. 위탁운영 조건

1.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제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수탁기관은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공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수탁기관은 수탁자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대여·재위탁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합니다.

VI.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당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단체가 추천한 순서에 의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단체(법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문의사항 : 공주시청 가족지원과 가족정책팀(☎041-840-8875). 끝.

검상농공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공 주 시 장

I. 지정(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일원
- 면적 : (기정) 449,173.7㎡ (변경) 447,994.0㎡ 감) 1,179.7㎡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공주시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기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건설하고자 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솔브레인(주), (주)SPCT [금회 사업시행자 : 솔브레인(주)]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2년 ~ 2026년
(변경) 2022년 ~ 2028년 12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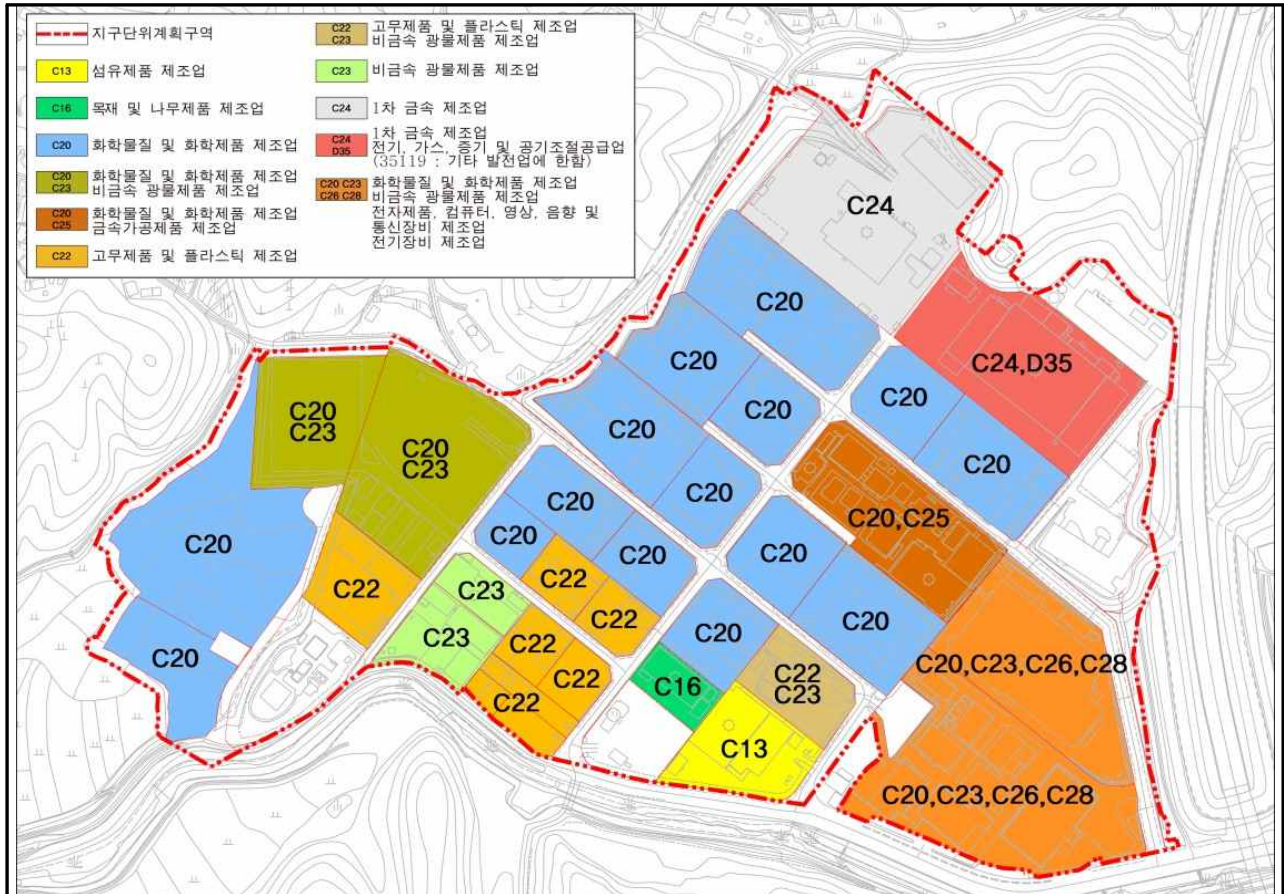
가. 주요 유치업종계획 (변경없음)

- 섬유제품 제조업(C1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장비 제조업(C28)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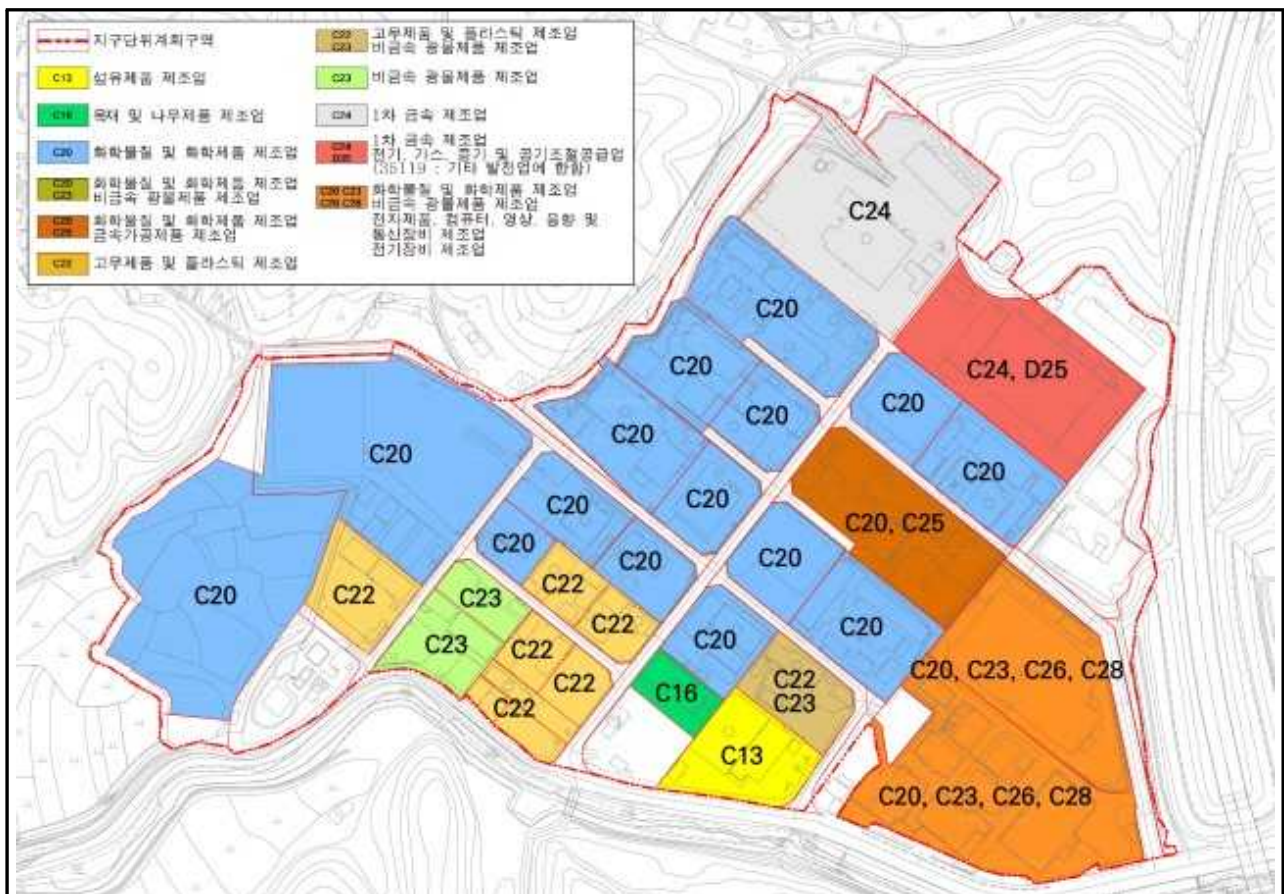
나.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코드	10개 업종	354,806.2	감) 98.2	354,708.0	100.0	
기정	C13	섬유제품 제조업	9,876.2	—	9,876.2	2.8	
기정	C22 C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832.2	—	6,832.2	1.9	
기정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602.6	—	3,602.6	1.0	
변경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8,687.0	증) 35,954.5	174,641.5	49.3	
기정	C20 C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484.0	—	17,484.0	4.9	
변경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5,932.8	감) 12.1	25,920.7	7.3	
기정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851.3	—	9,851.3	2.8	
변경	C20 C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040.6	감) 36,040.6	—	—	
기정	C24	1차 금속 제조업	30,519.9	—	30,519.9	8.6	
기정	C24 D35	1차 금속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9:기타발전업에 한함)	23,317.0	—	23,317.0	6.6	
기정	C20 C23 C26 C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52,662.6	—	52,662.6	14.8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기정 >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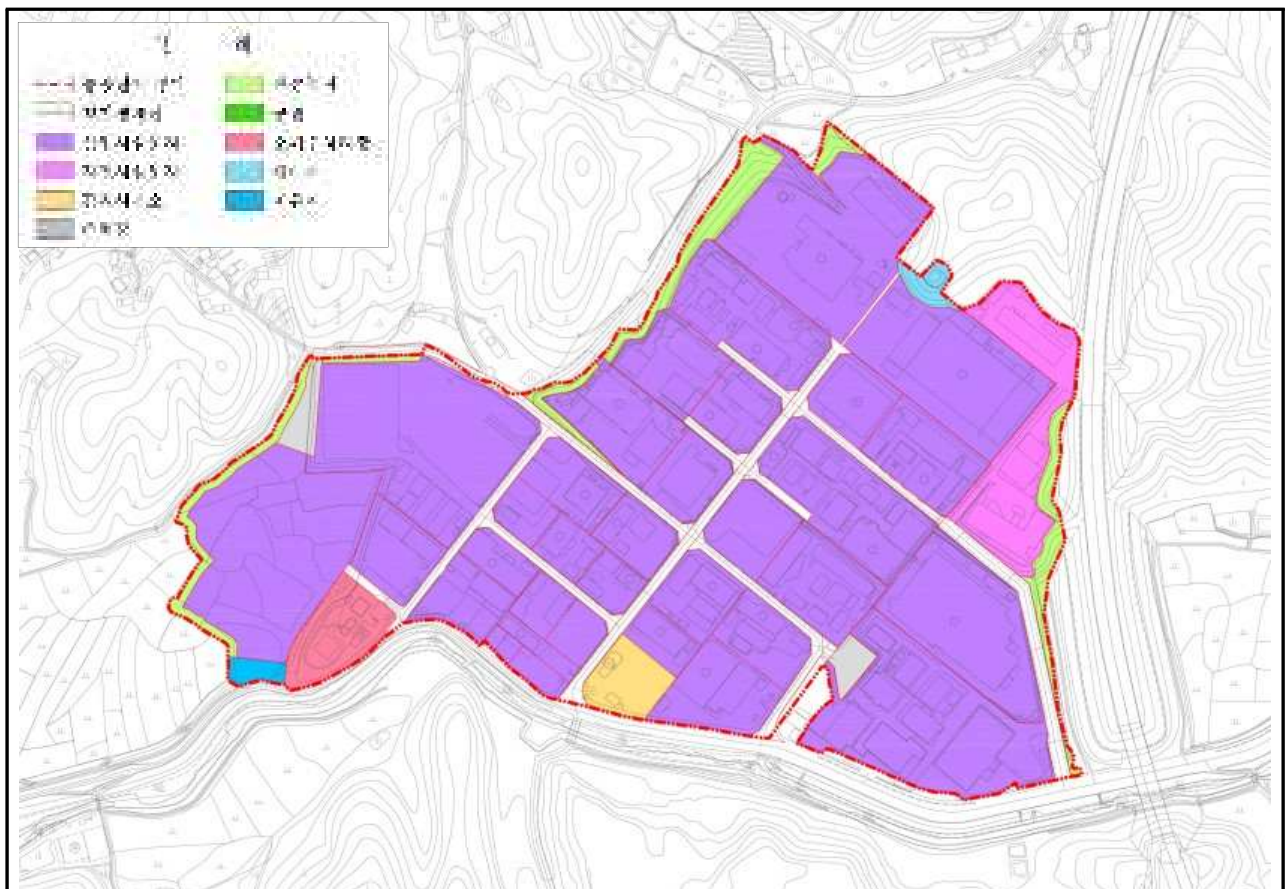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49,173.7	감) 1,179.7	449,994.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54,806.2	감) 98.2	354,708.0	79.2	
지	원 시 설 용 지	20,166.3	—	20,166.3	4.5	
공	공 시 설 용 지	74,201.2	감) 1,081.5	73,119.7	16.3	
	배 수 지	2,132.9	—	2,132.9	0.5	
	저 류 지	—	증) 1,707.0	1,707.0	0.4	금회신설
	오 폐수처리시설	9,779.0	감) 797.0	8,982.0	2.0	
	관 리 사 무 소	6,087.1	—	6,087.1	1.3	
	완 충 녹 지	20,661.2	감) 316.2	20,345.0	4.5	
	도 로	32,810.2	감) 3,664.3	29,145.9	6.5	
	주 차 장	2,730.8	증) 1,989.0	4,719.8	1.1	

< 토지이용계획도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8	2,977	32,810.2	1	293	4,474.0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8	2,763	29,145.9	1	79	844.7	1	352	5,263.0	6	2,332	23,038.2
중로	기정	7	2,684	28,336.2	—	—	—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7	2,684	28,301.2	—	—	—	1	352	5,263.0	6	2,332	23,038.0
소로	기정	1	293	4,474.0	1	293	4,474.0	—	—	—	—	—	—
	변경	1	79	844.7	1	79	844.7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폐지	소로	1	35	—	—	—	—	—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79	중로3-18	검상동 187-3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30.8	증) 1,989.0	4,719.8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변경	①-12	주차장	검상동 171번지 일원	691.0	증) 1,989.0	2,680.0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661.2	감) 316.2	20345.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4번지 일원	820.9	감) 30.5	790.4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1번지 일원	1,856.2	－	1,856.2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5번지 일원	6,729.3	－	6,729.3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35-3번지 일원	1,387.6	－	1,387.6		
변경	30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6번지 일원	4,847.0	감) 285.7	4,561.3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나)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초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㉔-5	가스공급시설	검상동 725-1번지	68.0	-	68.0			

4)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초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㉔-3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02-6번지	9,779.0	감) 797.0	8,982.0			

나)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초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저류지	저류시설	검상동 311-1번지일원	-	증) 1,707.0	1,707.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용수량(m³/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2,310.5	2,559.5	증) 252.5	
공 업 용 수	2,200.9	2,450.4	증) 249.5	
생 활 용 수	109.6	109.1	증) 2.7	

나.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오·폐수량(m³/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840.0	1,030.2	증) 190.2	
공 업 폐 수	796.2	46.2	증) 2.4	
생 활 오 수	43.8	984.0	증) 187.8	

다.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9,653.9	9,652.5	감) 1.4	
생산시설	9,539.7	9,538.3	감) 1.4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114.2	114.2	—	

라. 통신시설계획 (변경)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991	1,993	증) 2	
산 업 시 설	1,670	1,672	증) 2	
공 중 전 화	321	321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II.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 노환철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공업입지를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일원
- 면적 : (기정) 449,173.7㎡ (변경) 447,994.0㎡ 감) 1,179.7㎡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2년 ~ 2026년 (변경) 2022년 ~ 2028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9,173.7	감) 1,179.7	447,994.0	100.0	
공업 지역	소 계	449,173.7	감) 1,179.7	447,994.0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3,345.0	—	33,345.0	7.4	
	준 공 업 지 역	415,828.7	감) 1,179.7	414,649.0	92.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검상동 702-23번지일원	준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414,649.0		• 하천부지 인근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8	2,977	32,810.2	1	293	4,474.0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8	2,763	29,145.9	1	79	844.7	1	352	5,263.0	6	2,332	23,038.2
중로	기정	7	2,684	28,336.2	-	-	-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7	2,684	28,301.2	-	-	-	1	352	5,263.0	6	2,332	23,038.0
소로	기정	1	293	4,474.0	1	293	4,474.0	-	-	-	-	-	-
	변경	1	79	844.7	1	79	844.7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 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폐지	소로	1	35	-	-	-	-	-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79	중로3-18	검상동 187-3	일반도로	농공단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7	중로 3-17	• 도로 선형 변경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소로 1-35	-	• 도로 폐지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 1-2	• 도로 신설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30.8	증) 1,989.0	4,719.8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변경	①-12	주차장	검상동 171번지 일원	691.0	증) 1,989.0	2,680.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12	주차장	• 면적증가 691.0㎡ → 2,680.0㎡ • 위치 변경 검상동 309-1번지 일원 → 검상동 171번지 일원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661.2	감) 316.2	20,345.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4번지 일원	820.9	감) 30.5	790.4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1번지 일원	1,856.2	－	1,856.2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5번지 일원	6,729.3	－	6,729.3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35-3번지 일원	1,387.6	－	1,387.6		
변경	30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6번지 일원	4,847.0	감) 285.7	4,561.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녹지	• 면적감소 820.9㎡ → 790.4㎡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30	녹지	• 면적감소 4,847.0㎡ → 4,561.3㎡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나)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5	가스공급 시설	검상동 725-1번지	68.0	－	68.0		

4)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02-6번지	9,779.0	감) 797.0	8,982.0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3	수질오염 방지시설	• 면적감소 9,779.0㎡ → 8,982.0㎡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오폐수처리시설 면적 변경

나)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저류지	저류시설	검상동 311-1번지일원	-	증) 1,707.0	1,707.0		

◦ 저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류지	• 저류지신설	•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저류지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구역의 세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검상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 업 유통형	449,173.7	감) 1,179.7	447,994.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	검상동·봉정동 725-1번지 일원	447,994.0	• 하천부지 인근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감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8	2,977	32,810.2	1	293	4,474.0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8	2,763	29,145.9	1	79	844.7	1	352	5,263.0	6	2,332	23,038.2
중로	기정	7	2,684	28,336.2	-	-	-	1	352	5,263.0	6	2,332	23,073.2
	변경	7	2,684	28,301.2	-	-	-	1	352	5,263.0	6	2,332	23,038.0
소로	기정	1	293	4,474.0	1	293	4,474.0	-	-	-	-	-	-
	변경	1	79	844.7	1	79	844.7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폐지	소로	1	35	-	-	-	-	-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79	중로3-18	검상동 187-3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30.8	증) 1,989.0	4,719.8		
기정	①-1 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변경	①-1 2	주차장	검상동 171번지 일원	691.0	증) 1,989.0	2,680.0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661.2	감) 316.2	20345.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4번지 일원	820.9	감) 30.5	790.4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1번지 일원	1,856.2	－	1,856.2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725-15번지 일원	6,729.3	－	6,729.3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35-3번지 일원	1,387.6	－	1,387.6		
변경	30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6번지 일원	4,847.0	감) 285.7	4,561.3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㉔-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나)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㉔-5	가스공급시설	검상동 725-1번지	68.0	—	68.0		

4)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02-6번지	9,779.0	감) 797.0	8,982.0		

나)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저류지	저류시설	검상동 311-1번지일원	-	증) 1,707.0	1,707.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합계		354,806.2	—	354,806.2	
①	1	233,316.7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33,316.7	
	2-1	52,662.6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299-1번지 일원	31,451.9	
	2-2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3-1	35,466.9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35,466.9	
	3-2	33,360.0	공주시 검상동 186번지 일원	24,853.0	
	3-3		공주시 검상동 407-1번지 일원	8,507.0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합계		354,238.3	—	354,238.3	
①	1	233,316.7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33,316.7	
	2-1	52,662.6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299-1번지 일원	31,451.9	
	2-2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3-1	34,569.0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34,569.0	
	3-2	33,690.0	공주시 검상동 188번지 일원	33,690.0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0,166.3	—	20,166.3	—	20,166.3	
③	1	20,166.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20,166.3	—	20,166.3	

다) 공공시설용지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합계		20,729.8	—	20,729.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일원	6,087.1	관리사무소
	3	9,779.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일원	9,779.0	오·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일원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주차장
	12	691.0	공주시 검상동 309-1번지 일원	691.0	주차장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합계		22,436.8	—	22,436.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일원	6,087.1	관리사무소
	3	9,779.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일원	9,779.0	오·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일원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주차장
	12	691.0	공주시 검상동 309-1번지 일원	691.0	주차장
	13	1,707.0	공주시 검상동 311-1번지 일원	1,707.0	저류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공장용지 ①-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C13, C16, C20, C22, C23, C24, C25, C26, D35(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기정	공장용지 ①-2-1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C13, C16, C20, C22, C23, C24, C26, C28, D35(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4층(2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기정	공장용지 ①-2-2	봉정동 73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C13, C16, C20, C22, C23, C24, C26, C28, D35(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 2m, 기타(공공공지) 1m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공장용지 ①-3-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C13, C16, C20, C22, C23, C24, C26, D35(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 2m, 기타(공공공지) 1m	
기정	공장용지 ①-3-2 ①-3-3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C13, C16, C20, C22, C23, C24, C26, D35(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공장용지 ①-3-2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 2m, 기타(공공공지) 1m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 2m, 기타(공공공지) 1m

다) 공공시설용지 - 관리사무소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②-2	검상동 729-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 2m, 기타(공공공지) 1m

7. 행위의 제한

- 점상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